감 정 평 가 서

건 명	경상남도 양산시 삼호동 460-4번지 302호 소재 부동산에 대한 평가
의 뢰 인	부산동래신용협동조합 이사장
감정서번호	22-230615-304



이 감정평가서는 감정평가 의뢰목적 외의 목적에 사용하거나 타인(의뢰인 또는 담보감정평가시 확인은행이 아닌 자)이 사용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복사, 개작(改作), 전재(轉載)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한 결과에 대하여 감정평가업자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주)감정평가법인 태백 부산경남지사

TEL. 051-867-4060 FAX. 051-867-4070

(구분건물)감정평가표

이 감정평가서는 감정평가에 관한 법규를 준수하고 감정평가이론에 따라 성실하고 공정하게 작성하였기에 서명날인합니다.

감 정 평 가 사
정 선 미 (인)

(주)감정평가법인 태백 부산경남지사 지사장 정선미 (서명또는인)

감정평가액	일억사천사백만원정(₩144,000,000.-)			
의 뢰 인	부산동래신용협동조합 이사장	감정평가목적	공매	
채 무 자	-	제 출 처	부산동래신용협동조합	
소 유 자 (대상업체명)	박경호 [수탁자 : 국제자산신탁(주)]	기 준 가 치	시장가치	
		감정평가 조 건	-	
목 록 표 시 근 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집합건축물대장등본	기 준 시 점	조 사 기 간	작 성 일
		2023.06.17	2023.06.17	2023.06.22

감정평가내용	공부(公簿)(의뢰)		사 정		감 정 평 가 액	
	종 류	면적(㎡) 또는 수량	종 류	면적(㎡) 또는 수량	단 가	금 액
	구분건물	1 개호	구분건물	1 개호	-	144,000,000
		이	하	여	백	
	합 계					₩144,000,000

심사확인

본인은 이 감정평가서에 제시된 자료를 기준으로 성실하고 공정하게 심사한 결과 이 감정평가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므로 이에 서명날인합니다.

심 사 자 : 감 정 평 가 사
황 계 연 (인)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Ⅰ 감정평가의 개요

1. 감정평가 목적

본건은 경상남도 양산시 삼호동 소재 '서창동 행정복지센터'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는 부동산(구분건물)으로서, 공매 목적의 감정평가임.

2. 대상물건의 현황

1) 대상물건이 속한 전체건물의 개요

[출처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집합건축물대장등본]

구 분	내 용
명 칭	현칭 '쉐르하임'
소 재 지	경상남도 양산시 삼호동 460-4 [도로명주소 : 경상남도 양산시 연호7길 19]
용 도 지 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구 조 및 규 모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지상5층
사용승인일자	2016.12.12
주 용 도	공동주택(다세대)
기 타 설 비	위생 및 급·배수시설, 승강기설비, 화재경보기, 화재감지기, 도시가스에 의한 개별난방설비 등이 구비되었음.
비 고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2) 대상 물건의 현황

일련번호	층	호	용 도	전유면적 (㎡)	공용면적 (㎡)	공급면적 (㎡)	대지지분 (㎡)	전용율 (%)	비고
(가)	3	302	다세대주택	69.7	12.6562	82.3562	70.85	약 84.6	-

3. 기준시점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9조 제2항에 따라 대상물건의 가격조사 완료일인 2023년 06월 17일을 기준시점으로 하였음.

4. 실지조사 실시기간

대상물건의 실지조사 실시기간은 2023년 06월 17일임.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5. 기타 참고사항

1) 본건의 면적, 구조 등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집합건축물대장등본을 기준하였으며, 현장조사시 이해관계인의 폐문부재로 인하여 부득이 귀조합 요청에 의거하여 외부관찰에 의한 통상적인 상태로 상정하여 평가하였고, 위치확인은 집합건축물대장등본상 첨부도면 및 문패호수 등을 기준하였으므로, 공매 진행 및 응찰시 참고하시기 바람.

2) 본건 구분건물 (가)의 호별위치는 집합건축물대장등본상 첨부도면의 위치(301호, 302호)와 점유 및 사용중인 위치(301호, 302호)가 상이하여 집합건축물대장등본상 첨부도면을 기준하여 위치확인하였으므로, 공매 진행 및 응찰시 유의하시기 바람.

3) 본건은 구분건물로서, 관련법규에 의하면 건물의 전유부분과 대지권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고, 거래관행도 일체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귀 조합 요청에 의거하여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대지권 가격을 배분할 경우의 금액을 감정평가명세표 상에 별도 부기하였으므로, 공매 진행 및 응찰시 참고하시기 바람.

4) 본건 부동산의 임대관계는 현장조사시 이해관계인의 부재로 인하여 부득이 조사하지 못하였으므로, 공매 진행 및 응찰시 참고하시기 바람.

5) 본건 건물 내 전입세대 열람내역은 후첨 '전입세대 열람내역'과 같으므로, 공매 진행 및 응찰시 참고하시기 바람.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Ⅱ 기준가치 및 감정평가 조건

1. 기준가치

본건의 부동산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5조 제1항의 '시장가치' 를 기준으로 감정평가 하였음.

2. 감정평가 조건

■ 개요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6조 제1항에 따라 기준시점에서의 대상물건의 이용상황(불법적이거나 일시적인 이용은 제외한다) 및 공법상 제한을 받은 상태를 기준으로 감정평가함이 원칙이나, 의뢰인이 요청하는 경우, 감정평가의 목적이나 대상물건의 특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준시점의 가치형성요인 등을 실제와 다르게 가정하거나 특수한 경우로 한정하는 조건(감정평가조건)을 붙여 감정평가 할 수 있음.

■ 의뢰인이 제시한 감정평가 조건에 대한 검토

별도의 감정평가 조건은 없음.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Ⅲ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1. 감정평가 기준

본 감정평가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감정평가 실무기준』 등 관련 법규 및 일반이론 등에 따라 감정평가 하였음.

2. 감정평가 방법의 규정

▪ 부동산 및 동산 등에 대한 감정평가방식(방법)에는 '비용성'에 기초한 원가방식(원가법 및 적산법 등), '시장성'에 기초한 비교방식(거래사례비교법, 임대사례비교법 및 공시지가기준법 등), '수익성'에 기초한 수익방식(수익환원법 및 수익분석법 등)이 있음.

▪ 원가방식이란 대상물건이 어느 정도의 비용이 투입되어야 만들 수 있는가 라는 '비용성'에 근거하며, '공급측면'에서 비용과 가치의 상호관계를 파악하여 대상물건의 가치를 산정하는 방식임.

▪ 비교방식이란 대상물건이 어느 정도의 가격으로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가 라는 '시장성'에 근거하며, '실증적인 교환측면'에서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과 가치의 상호관계를 파악하여 대상물건의 가치를 산정하는 방식임.

▪ 수익방식이란 대상물건을 이용함으로써 어느 정도 수익을 얻을 수 있는가 라는 '수익성'에 근거하며, '수요측면'에서 수익과 가치의 상관관계를 파악하여 대상물건의 가치를 산정하는 방식임.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3. 평가방법

▪ 구분건물의 평가방법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6조에 따라 구분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건물부분과 그 대지사용권을 일괄하여 거래사례비교법으로 시산가액을 산정하였으며, 대상물건의 특성상 다른 감정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곤란하므로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2조 제2항 단서조항에 의거 거래사례비교법 이외의 다른방식에 의한 시산가액과의 비교를 통한 합리성 검토는 생략하고 인근 유사부동산의 가격수준, 평가사례 등 관련 가격자료를 통해 시산가액의 합리성을 검토하여 감정평가액을 결정하였음.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IV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시산가액 산출근거

1. 감정평가방법의 적용

대상물건과 가치형성요인이 같거나 비슷한 물건의 거래사례와 비교하여 사정보정, 시점수정, 가치형성요인 비교 등의 과정을 거쳐 대상물건의 가액을 산정함.

2. 거래사례의 선정

1) 인근지역 내 유사부동산의 거래사례

[출처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KAIS]

사례	소재지 (경상남도 양산시) 건물명 동/층/호수	전유면적 (㎡)	거래금액 (원)	전유면적당 거래단가 (원/㎡)	이용 상황	거래시점 사용승인
#1 선정	명동 704-5 부경리더스 제B동 제3층 제302호	67.3575	140,000,000	2,078,000	공동주택 (다세대)	2023.04.13 2015.11.05
#2	명동 705-3 해든파크 제5층 제502호	69.9275	146,000,000	2,088,000	공동주택 (다세대)	2022.04.04 2013.04.15
#3	명동 1080-10 그랜드팰리스2차 제202동 제23층 제2302호	65.84	150,000,000	2,278,000	공동주택 (다세대)	2020.07.30 2017.09.15
#4	명동 1080-10 그랜드팰리스2차 제202동 제25층 제2502호	61.3	160,000,000	2,610,000	공동주택 (다세대)	2020.09.03 2017.09.15

※ 전유면적당 거래단가 = 거래금액 ÷ 전유면적

2) 비교거래사례의 선정

대상물건의 인근에 위치한 구분건물 거래사례 중 대상물건과 위치적, 물적 유사성이 있는 **거래사례 #1**을 비교사례로 선정하였음.

3. 사정보정

거래사례는 매도자와 매수자 사이의 정상적인 거래사례로 보임.

(사정보정치 = **1.000**)

4. 시점수정

1) 경상남도 연립•다세대주택 매매가격지수

[출처 : KAPA HUB]

구분	01월	02월	03월	04월	05월	06월	07월	08월	09월	10월	11월	12월
2023년	99.2	98.8	98.6	98.4	98.2	-	-	-	-	-	-	-

2) 거래사례 #1 시점수정치

본건유형	구 분	적 용 년 월	가격지수	비 고
다세대주택	기준시점 (2023.06.17)	2023년 05월	98.2	A
	사례 거래시점 (2023.04.13)	2023년 03월	98.6	B
시점수정치			**0.99594**	A/B

※ 기준시점이 속한 월 이후의 매매가격지수가 미발표 되어, 직전 월의 지수를 적용함.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5. 가치형성요인 비교

[주거용]

구 분		격 차 율		비 고
조 건	세 부 항 목	비교사례	대상	
외부요인	대중교통의 편의성 (지하철, 버스정류장)	1.00	1.00	본건은 거래사례 대비 제조건 유사함.
	교육시설 등의 배치			
	도심지 및 상업 . 업무시설과의 접근성			
	차량이용의 편리성 (가로의 폭, 구조 등)			
	공공시설 및 편익시설 등의 배치			
	자연환경(조망 . 풍치 . 경관 등)			
건물요인	시공업체의 브랜드	1.00	1.00	본건은 거래사례 대비 제조건 유사함.
	단지내 총 세대수 및 최고층수			
	건물의 구조 및 마감상태			
	경과연수에 따른 노후도			
	단지내 면적구성 (대형 . 중형 . 소형)			
	단지내 통로구조(복도식/계단식)			
개별요인	층별 효용	1.00	1.00	본건은 거래사례 대비 제조건 유사함.
	향별 효용			
	위치별 효용(동별 및 라인별)			
	전유·공용 부분의 면적 및 대지권의 크기			
	내부 평면방식(베이)			
	간선도로 및 철도 등에 의한 소음			
기타요인	기타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및 기타	1.00	1.00	환가성, 최근의 부동산 가격동향 등을 고려함.
누 계		1.00	1.000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6.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비준가액 산정

대상물건		거래사례 단가 (원/㎡)	사정 보정	시점 수정	가치형성 요인	산정단가 (원/㎡)	산출가액(원)	비준가액(원)
일련 번호	전유면적 (㎡)							
(가)	69.7	2,078,000	1.0000	0.99594	1.000	2,069,563	144,248,541	144,000,000
합 계						-	-	**144,000,000**

7. 가격자료 및 합리성 검토

1) 인근지역 내 유사부동산의 평가전례

[출처 : KAPA HUB]

사례 기호	소재지 (경상남도 양산시) 명칭	동/호	전유면적 (㎡)	평가 목적	감정평가액(원) / 단가(원/㎡)	이용 상황	기준시점 / 사용승인
#5	삼호동 460-4 쉐르하임	- / 301	69.7	경매	141,000,000 / 2,023,000	공동주택 (다세대)	2021.10.18 / 2016.12.12
#6	삼호동 540 보금맨션	- / 501	63.3125	경매	129,000,000 / 2,038,000	공동주택 (다세대)	2021.04.26 / 2017.01.06
#7	명동 704-5 부경리더스	비 / 302	67.3575	공매	149,000,000 / 2,212,000	공동주택 (다세대)	2021.03.11 / 2015.11.05
#8	명동 704-5 부경리더스	비 / 401	65.295	담보	119,000,000 / 1,822,000	공동주택 (다세대)	2022.03.03 / 2015.11.05
#9	명동 704-18 부경리더스	에이 / 502	67.3575	담보	165,000,000 / 2,450,000	공동주택 (다세대)	2021.08.06 / 2015.10.15
#10	명동 704-18 부경리더스	에이 / 301	65.295	공매	144,000,000 / 2,205,000	공동주택 (다세대)	2021.03.11 / 2015.10.15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2) 인근 유사부동산의 가격수준

구분	가 격 수 준	비고
다세대주택	본건과 유사한 부동산의 가격수준은 층별, 위치별, 실사용면적 등에 따라 전유면적 기준 2,000,000원/㎡ ~ 2,100,000원/㎡ 내외 수준으로 탐문조사됨.	-

3) 경매통계자료

[출처 : 태인경매정보]

소재지	물건구분	통계기간	낙찰가율(%)	낙찰건수(건)
경상남도 양산시	다세대주택	1년간	63.36	12
		6개월간	63.89	4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V 감정평가액 결정

1. 감정평가액 결정

일련번호	호	전유면적(㎡)	공용면적(㎡)	비준가액(원)	감정평가액(원)	전유면적기준단가(원/㎡)	비 고
(가)	302	69.7	12.6562	144,000,000	144,000,000	2,065,997	-
합 계				144,000,000	144,000,000	-	-

2. 감정평가액 결정의견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해 산정된 시산가액을 상기 '비교사례, 인근 평가사례'등과 비교시,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시산가액의 합리성이 인정되므로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시산가액을 기준으로, 본건의 평가목적을 고려하여 환가성, 최근의 부동산 가격동향, 장래의 불확실성 등을 종합 참작하여 감정평가액을 결정하였음.

구분건물 감정평가명세표

일련번호	소재지	지 번	지 목 및 용 도	용도지역 및 구 조	면 적 (㎡) 공 부	면 적 (㎡) 사 정	감정평가액	비 고
	경상남도 양산시 삼호동 [도로명주소] 경상남도 양산시 연호7길 19	460-4	공동주택 (다세대)	철근 콘크리트구조 (철근) 콘크리트지붕 5층 1층 2층 ~ 5층	 111.96 각 159.65			
1	동소	460-4	대		660			
(가)				(내) 철근 콘크리트구조 제3층 제302호 1. 소유권대지권	69.7 70.85 ----- 660	69.7 70.85	144,000,000 토지 · 건물 토 지 : 건 물 :	비준가액 집합건축물 대장등본상 공용면적포함 82.3562㎡ 배분내역 38,880,000 105,120,000
	합 계			이 하	여	백	₩144,000,000.-	

구분건물 감정평가 요항표

1 위치 및 부근의 상황

1) 위치

본건은 경상남도 양산시 삼호동 소재 '서창동 행정복지센터' 북동측 인근에 위치함.

2) 주위환경

본건 주위는 단독주택, 공동주택(아파트,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업무시설(주거용 오피스텔) 및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여 형성되어 있으며, 주거지로서의 주위환경 및 제반 입지조건은 무난한 편임.

2 교통 상황

본건 인근에 시내버스 정류장 등이 소재하여 대중교통상황은 무난한 편임.

3 건물의 구조 및 이용상태

1) 구 조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지상5층 건물 내 제3층 제302호로서, 2016.12.12.자로 사용승인되어 현상은 보통인 편임.

외벽 : 화강석 및 스톤코트 마감,

창호 : 새시조 이중창호임.

2) 이용상태

공동주택(다세대주택 - 폐문부재)으로 이용중임.

구분건물 감정평가 요항표

4 냉난방설비 등 주요설비 및 기타설비

위생 및 급·배수시설, 승강기설비, 화재경보기, 화재감지기, 도시가스에 의한 개별난방설비 등이 구비되었음.

5 토지 형태 및 이용상태 및 인접도로

1) 형태 및 이용상태

부정형의 토지로서, 자체지반 평탄하게 조성되어 있으며, 주상용 건부지로 이용중임.

2) 인접도로 상태

본건 남동측으로 약 8m 내외 폭의 포장도로와 접함.

6 토지이용계획 및 기타 공법상 제한상태

제2종일반주거지역, 소로2류(폭 8m~10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임.

7 공부와의 차이

없 음.

구분건물 감정평가 요항표

8 임대관계

본건 부동산의 임대관계는 현장조사시 이해관계인의 부재로 인하여 부득이 조사하지 못하였음.

9 기타 참고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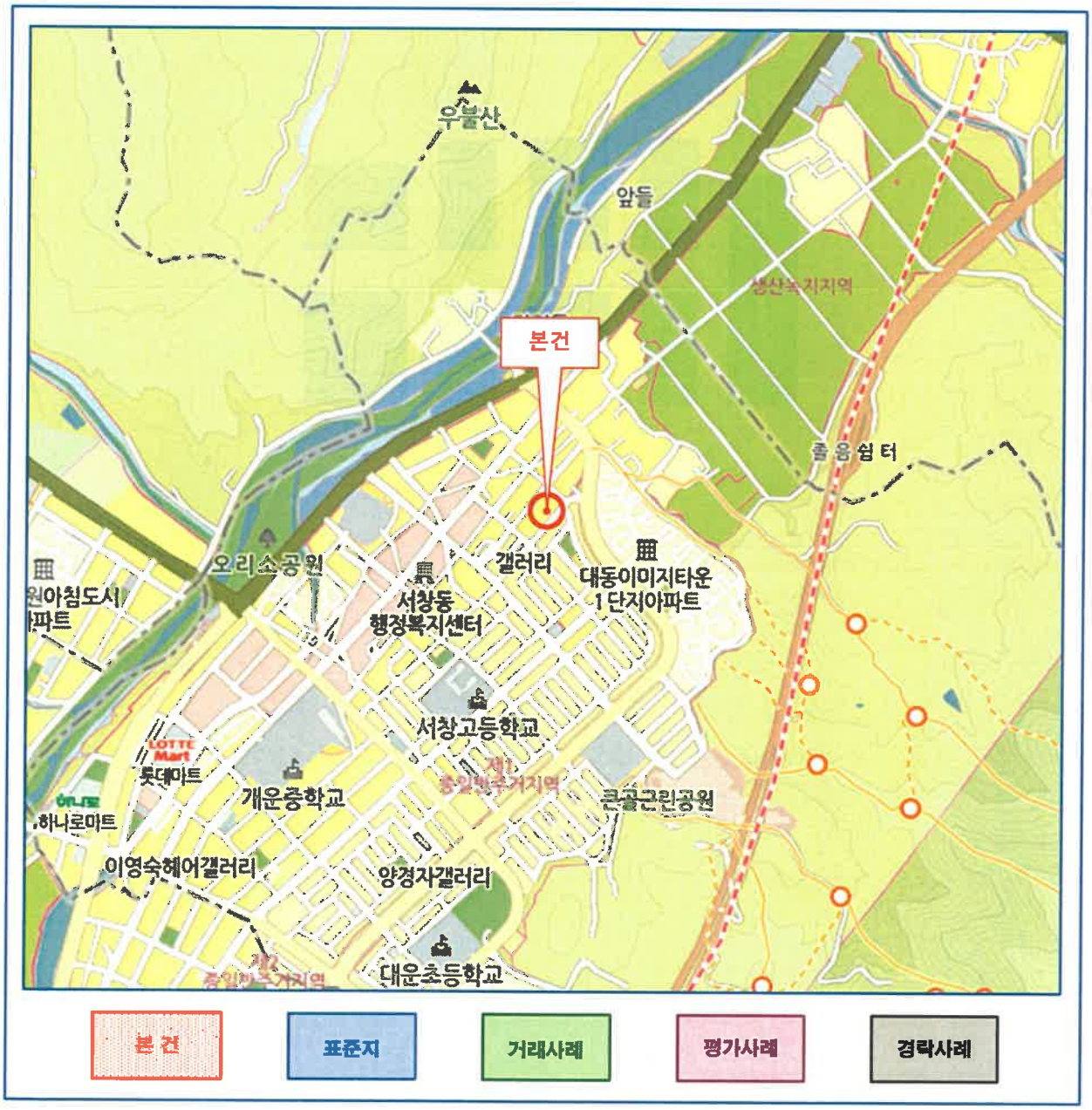
본건 부동산의 '전입세대 열람내역'은 후첨 '전입세대 열람내역'과 같음.

광역위치도

N

S

본건 소재지	경상남도 양산시 삼호동 일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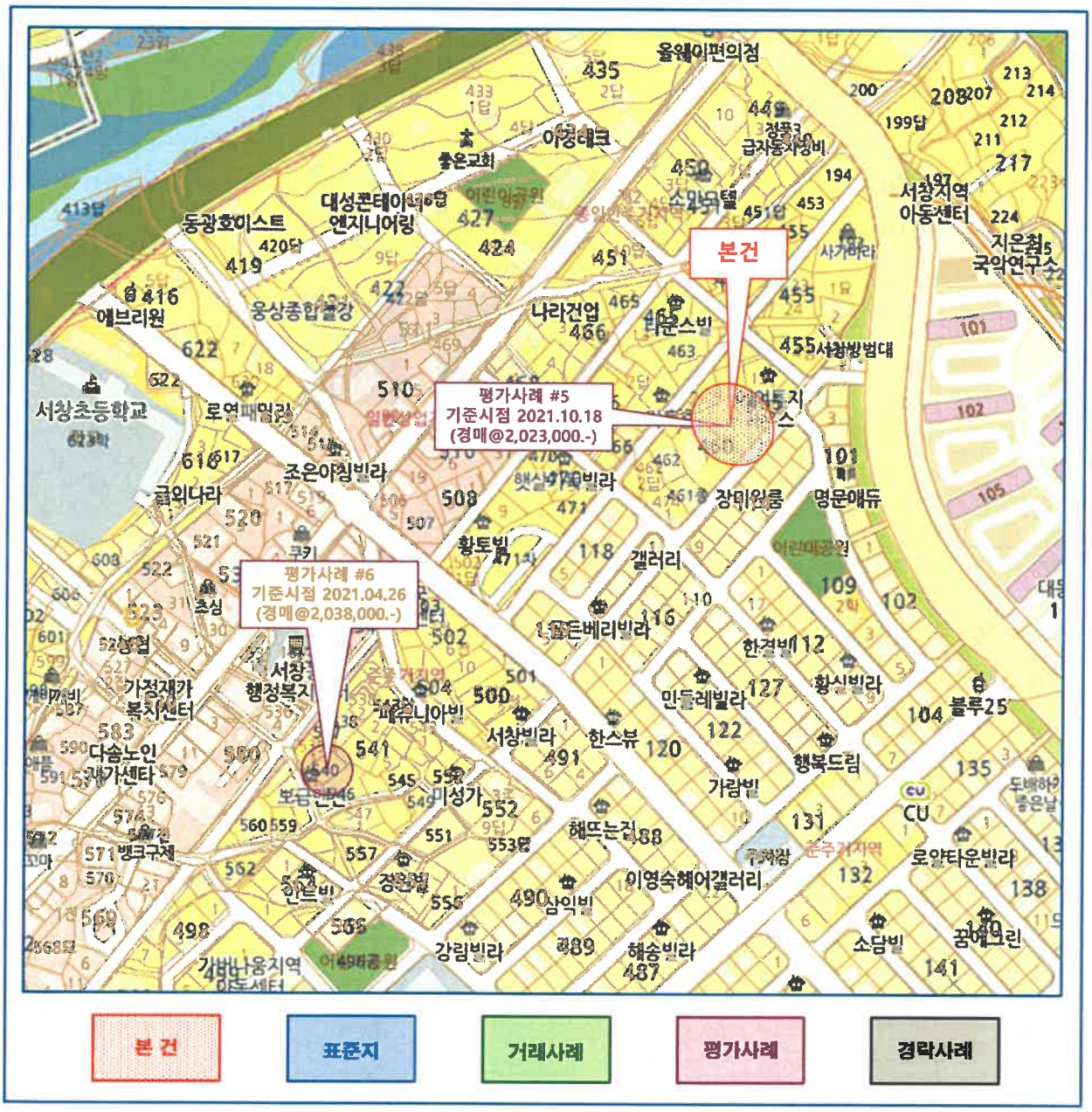


상 세 위 치 도

N

S

본건 소재지	[본건] 경상남도 양산시 삼호동 460-4번지



호별배치도 및 내부이용상황, 임대상황



[쉐르하임 3층]

임대상황

임대부분	임차인	임대내역		비고
		임대보증금	월임대료	
-	-	미	상	-

전입세대확인서(동거인포함)

발급번호	2916-4005-0801-0040	발급일자	2023년 6월 16일 13:21:46

열람 또는 교부 대상 건물 또는 시설 소재지	경상남도 양산시 연호7길 19, 302호 (삼호동)

세대순번	세대주 / 최초 전입자	성명	전입일자	등록구분	동거인 사항	순번	성명	전입일자	등록구분
			최초 전입자의 전입일자						
1	세대주	서 종태 (徐宗泰)	2018-07-18	거주자	동거인				
	최초 전입자		2018-07-18						

「주민등록법」 제29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해당 건물 또는 시설의 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세대가 위와 같음을 증명합니다.

2023년 6월 16일

해운대구청장

담당자 의견	도로명주소와 지번주소로 각각 조회한 결과가 함께 제공되오니, 양 주소 조회 결과를 반드시 모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1. 확인하려는 전입세대의 주소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에는 전입세대확인서를 통해 해당 전입세대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2. 외국인 및 외국국적동포는 세대주 또는 주민등록표 상의 동거인이 될 수 없으므로, 외국인 및 외국국적동포의 세대주 및 동거인 여부는 전입세대확인서를 통해 확인할 수 없습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

(수입증지가 인영(첨부)되지 아니한 증명은 그 효력을 보증할 수 없습니다.)

부산광역시해운대구 500원 2023.06.16 26350004

문서발행일: 2023년06월16일

해운대구청장인 문화복합센터민원실전용

사 진 용 지



[본건 동측 인근에서]



[본건 남측 인근에서]

사 진 용 지



[본건 (문패호수 '301호')]

회 보 서

우)48059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중앙로 90, 1210호(큐비이센텀)

TEL. 051-867-4060
FAX. 051-867-4070

문서번호 : 22-230615-304

시행일자 : 2023-06-22

수 신 : 부산동래신용협동조합 이사장

참 조 :

제 목 : 감 정 의 뢰 에 대 한 회 보

선결			지시		
접수	일자 시간		결재·공람		
	번호				
처 리 과					
담 당 자					

1. 저희 (주)감정평가법인 태백의 업무에 협조하여 주심에 대하여 감사드리오며, 귀 조합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023.06.15일자로 저희 법인에 의뢰하신 『경상남도 양산시 삼호동 460-4번지 302호 소재 부동산에 대한 평가』 건에 대하여 첨부와같이 감정하여 회보합니다.

첨 부 : 1. 감정평가서 1 부
2. 청구서 1 부
3. 수수료산정내역서 1 부

(주)감정평가법인 태백 부산경남지사

지사장 정선미

수수료 청구서

(전화: 051-867-4060, FAX: 051-867-4070)

문서번호 : 22-230615-304

수 신 : 부산동래신용협동조합 이사장 귀하

제 목 : 감정평가 의뢰에 대한 회신 및 수수료 납입통지

1. 2023.06.15 자 귀 제『 』 호로 의뢰하신『 경상남도 양산시 삼호동 460-4번지 302호 소재 부동산에 대한 평가 』 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평가하여 회보합니다.

2. 위 건에 대하여 감정평가 보수 기준에 의거 아래와 같이 평가수수료를 청구하오니 정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 구 내 역

과 목		금 액	비 고
평 가 수 수 료		**282,720**	200,000+94,000,000 x 11/10,000 x 0.8배≒282,720
실비	여 비	89,200	
	토지조사비	—	
	물건조사비	10,000	
	공부발급비	2,000	
	기타 실비	3,000	
	소 계	104,200	
특 별 용 역 비		—	
공 급 가 액		386,000	1,000원 미만 절사
부 가 세		38,600	
합 계		**424,600**	
기납부 착수금		—	
정 산 청 구 액		**424,600**	

붙 임 : 감정평가서 1 부

※ 송 금 처 ※

부산동래신용협동조합 : 131-021-720936(예금주:(주)감정평가법인 태백 부산경남지사)

(주)감정평가법인 태백 부산경남지사

지사장 정선미

수수료 산정내역서

수 신: 부산동래신용협동조합 이사장 귀하

평가서번호: 22-230615-304

정산청구액: **사십이만사천육백원정 (₩424,600.-)**

감정평가액		1.0배분 평가액	1.5배분 평가액	총 액
		144,000,000	-	₩144,000,000
기초수수료		5천이하 : 50,000,000 = 200,000 5천초과 5억이하 : 94,000,000 * 11/10000 * 0.80 = 82,720 수수료 : 282,720 소 계 : 303,400		
평가수수료	1.0배	200,000+94,000,000 x 11/10,000 x 0.8배≒282,720		303,400
	1.5배			-
	소 계			282,720
실비	여 비			89,200
	토지조사비			-
	물건조사비			10,000
	기 타			5,000
	소 계			104,200
공 급 가 액		평가수수료 + 실비		386,000
부 가 세		공급가액 × 0.1		38,600
기납부 착수금				-
정 산 청 구 액		공급가액 + 부가세 - 기납부 착수금		₩424,600

공급가액은 1,000원 미만 절사

(주)감정평가법인 태백 부산경남지사

지사장 정선미